

서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6
----------	----

제출년월일 : 1996.4.4.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1. 제안이유

- 현행 지방세 감면조례중 개정 요구사항을 수립하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감면 등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 시행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조례에서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 를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 로함 (안제2조제2항),
- 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조례에서 제6조의 2를 신설하여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경감(100분의50)토록함 (안제6조의2),
- 다.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조례 제7조에제7호신설 - 등록된 과학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면제함 (안제7조제7호),
- 라.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례에서 “영구임대 주택용 부동산에” 를 “영구 임대 주택과 영구임대 주택단지안의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로 일부자구를 정정하여 시행토록 함 (안제12조제2항),
- 마.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 조례에서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자 및 참여자” 를 “지정을 받은자와 참여자 및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자” 로 “중소기업진흥법 제14조의” 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로 개정운영함. (안제13조제3호및제4호),

서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는 별표1에 정하는 자에 한한다)가” 를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조에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12조제2항중 “영구임대주택(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를 “영구임대주택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과 당해 영구 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그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에 한한다)용 부동산에” 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중 “지정을 받은 자 및” 을 “지정을 받은 자와” 로 하고, “참여자” 를 “참여자 및 농산물가공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지원 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자” 로 하며, 같은조

같은항 제3호중 “중소기업진흥법 제14조의”를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
률의”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별지서식”을 “별지제1호서식”으로 한다.

별지서식 시세감면 신청서를 별지제1호서식으로 하고, 급수·분류번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유효기간)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③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하였거나 부과하여
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p> <p>① (생략)</p> <p>② 국가유공자에우등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급수 <u>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u> (다만 <u>3급 내지 5급의 경우는 별표1에 정하는 자에 한한다</u>)가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배기량 2,000씨씨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p>	<p>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1급내지 6급</u> ----- <u>에 해당하는 자가</u> ----- ----- ----- -----</p> <p>제6조의2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p> <p><u>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p>
<p>제7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p> <p>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회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시설을</p>	<p>제7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p> <p>----- ----- ----- -----</p>

현행	개정안
<p>다른 용도에 겸용하거나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시설용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 ----- ----- -----</p>
<p>1. ~ 6. (생략) <u><신 설></u></p>	<p>1. ~ 6. (현행과 같음) 7. <u>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u></p>
<p>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생략) ②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u>영구 임대주택 (임대주택법시행령제9조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기간 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 용부동산에</u>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p>	<p>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 영구 임대주택 (임대주택법시행령제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기간 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 과 당해 영구 임대주택 단지의 복리시설 (그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에 한한다) 용 부동산에 -----</p>
<p>제13조 (농외소득원개발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 을 경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p>	<p>제13조 (농외소득원개발에 대한 감면) ① ----- ----- ----- ----- ----- ----- -----</p>

현행	개정안
<p>의 경우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생략)</p> <p>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규정에 의한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의 <u>지정을 받은 자</u>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u>참여자</u></p> <p>3. <u>중소기업진흥법 제14조의</u>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 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p> <p>4. (생략)</p> <p>②(생략)</p> <p>제23조(감면신청등)①이 조례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u>별지서식</u>의 충청남도 서산시세감면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 대상임을 알수 있을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p>	<p>-----</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p> <p>-----</p> <p><u>지정을 받은자와</u> -----</p> <p>-----</p> <p>-----</p> <p>----- <u>참여자 및 농산물가공육성 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 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자</u></p> <p>3. <u>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u> -----</p> <p>-----</p> <p>4. (현행과 같음)</p> <p>②(현행과 같음)</p> <p>제23조(감면신청등)① -----</p> <p>----- <u>별지제1호서식</u></p> <p>-----</p> <p>-----</p> <p>-----</p> <p>-----</p> <p>-----</p>

한		행	개 정 안
급	수	분 류 번 호	<삭 제>
3 급		<u>5, 13, 22, 23, 24, 27, 31,</u> <u>72, 78, 81, 83, 86, 89</u>	
4 급		<u>108, 109, 111, 112, 113</u>	
5 급		<u>25, 26, 28, 29, 41, 73, 77, 92</u>	
6 급 복합호수자	1항	<u>35, 36, 47, 48, 115, 116,</u> <u>117, 119, 120, 121, 122, 125,</u> <u>126, 127, 129, 130, 131</u>	
	2항	<u>16, 30, 32, 37, 39, 40, 44,</u> <u>49, 52, 53, 54, 57, 58, 59,</u> <u>60, 64, 65, 67, 69, 70, 74,</u> <u>75, 88</u>	
비 고		다만, 위에서 지정되지 않은 3급 내지 5급의 호수자는6급 1항 및 2항에 정한 상하지 계통호수와 복합된 경우에 그 대상이 된다.	

심 사 보 고 서

【서산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1996. 4. 15

총 무 위 원 회

1. 심 사 경 과

- 가. 제 출 일 자 : 1996. 4. 4
- 나.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 다. 회 부 일 자 : 1996. 4. 8
- 라. 상 정 일 자 : 1996. 4. 15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세무과장 유제동)

가. 제안이유

현행 지방세 감면조례중 개정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등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 시행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조례에서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를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로함 (안 제2조 제항),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조례에서 제6조의 2를 신설하여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경감(100분의 50)토록함 (안 제6조의 2),
-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조례 제7조에 제7호 신설 - 등록된 과학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면제함 (안 제7조 제7호),

-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례에서 “영구임대 주택용 부동산에”를 “영구임대 주택과 영구임대 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용 부동산에”로 일부 자구를 정정하여 시행토록 함 (안 제12조 제2항),
-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 조례에서 “농어촌 특산물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및 참여자”를 “지정을 받은자와 참여자 및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자”로 “중소기업 진흥법 제14조의”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로 개정운영함. (안 제13조 제3호 및 제4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 운용되고 있는 서산시세 감면 조례에 관하여
 -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의 감면폭을 현행 1급~5급 까지를 1급~6급까지로 확대하고
 - 유료노인복지 시설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100 경감.
 -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면제대상에 과학관 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의 신설
 - 영구임대 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50/100경감), 종합토지세 (3/1,000세율고정)의 감면 및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대상자 확대등
- 시민 복지향상과 소득증대 도모를 위한 세제지원으로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 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것으로 사료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없었음

5. 토 론

- 없었음

6. 소수의견

- 없었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가결